

남울산 노르웨이숲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1.2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내용

※ 2025.01.24.(금) 공고한 “남울산 노르웨이숲”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구분	변경 전 (P.32)				변경 후(P.32)			
변경 내용	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372190	우리자산신탁(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126-5316-03	우리자산신탁(주)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6-03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거주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1.24.(금)	25.02.03.(월)	25.02.04.(화)	25.02.05.(수)	25.02.11.(화)	25.02.17.(월)~ 25.02.21.(금)	25.02.24.(월)~ 25.02.26.(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남울산노르웨이숲.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1.2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2.03.(월)	25.02.04.(화)	25.02.05.(수)	25.02.11.(화)	25.02.17.(월)~ 25.02.21.(금)	25.02.24.(월)~ 25.02.26.(수)
방 법	■ (PC·모바일)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남울산 노르웨이숲 견본주택 (주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62-34)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택과 - 2935호(2025.0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1번지 일원

■ 지역/지구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상대보호구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6층 / 12개동 총 848세대 중 일반분양 3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95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67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0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750	01	059.9957A	59A	59.9957	21.0807	81.0764	33.4613	114.5377	32.4644	59	6	9	12	2	6	35	24	3
	02	059.9734B	59B	59.9734	21.7857	81.7591	33.4488	115.2079	32.4524	76	8	11	15	2	8	44	32	3
	03	074.5847A	74A	74.5847	25.0548	99.6395	41.5980	141.2375	40.3587	49	5	7	10	2	5	29	20	4
	04	074.9026B	74B	74.9026	26.0082	100.9108	41.7753	142.6861	40.5308	46	5	7	9	1	5	27	19	3
	05	084.9350A	84A	84.9350	28.1463	113.0813	47.3706	160.4519	45.9594	59	6	9	12	2	6	35	24	2
	06	084.4955B	84B	84.4955	28.6027	113.0982	47.1255	160.2237	45.7216	43	4	7	9	1	4	25	18	3
	합 계									332	34	50	67	10	34	195	137	1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과 순서가 상이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²)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2	1	1	1	1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1	1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1	1	1	0	6
	장애인	1	2	1	1	1	1	7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1	2	1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11	7	7	9	7	50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15	10	9	12	9	6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2	1	2	1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6	8	5	5	6	4	34
합 계		35	44	29	27	35	25	1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59.9957A	59.9734B	74.5847A	74.9026B	84.9350A	84.4955B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84A	84B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 원)

약식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총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15일내)	1회(10%) 2025.05.20.	2회(10%) 2025.05.20.	3회(10%) 2025.05.20.	4회(10%) 2025.07.20.	5회(10%) 2025.08.20.	6회(10%) 2025.10.20.	입주 지정일
59A	102 103 104 112(1호)	2층	2	54	88,275,000	232,725,000	321,000,000	5,000,000	11,05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112,350,000
		3~4층	6		89,100,000	234,900,000	324,000,000	5,000,000	11,2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113,400,000
		5~9층	13		89,925,000	237,075,000	327,000,000	5,000,000	11,35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114,450,000
		10~19층	25		91,850,000	242,150,000	334,000,000	5,000,000	11,7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16,900,000
		20층 이상	8		93,775,000	247,225,000	341,000,000	5,000,000	12,05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119,350,000
	112(4호)	2층	1	5	85,525,000	225,475,000	311,000,000	5,000,000	10,55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108,850,000
		5~9층	1		87,175,000	229,825,000	317,000,000	5,000,000	10,85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110,950,000
		10~19층	3		89,100,000	234,900,000	324,000,000	5,000,000	11,2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113,400,000
	103 104	2층	3	76	87,175,000	229,825,000	317,000,000	5,000,000	10,85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110,950,000
		3~4층	8		88,000,000	232,000,000	320,000,000	5,000,000	11,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112,000,000
		5~9층	15		88,825,000	234,175,000	323,000,000	5,000,000	11,15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113,050,000
		10~19층	28		90,750,000	239,250,000	330,000,000	5,000,000	11,5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115,500,000
		20층 이상	22		92,675,000	244,325,000	337,000,000	5,000,000	11,85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117,950,000
74A	107 108(1,2호) 111	2층	3	43	110,550,000	291,450,000	402,000,000	5,000,000	15,1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40,700,000
		3~4층	6		111,650,000	294,350,000	406,000,000	5,000,000	15,3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42,100,000
		5~9층	14		112,750,000	297,250,000	410,000,000	5,000,000	15,5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43,500,000

	108(5호) 110(5호)	10~19층	20	6	114,950,000	303,050,000	418,000,000	5,000,000	15,9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46,300,000
		2층	1		107,250,000	282,750,000	390,000,000	5,000,000	14,5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36,500,000
		3~4층	1		108,350,000	285,650,000	394,000,000	5,000,000	14,7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37,900,000
		5~9층	3		109,450,000	288,550,000	398,000,000	5,000,000	14,9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39,300,000
		10~19층	1		111,650,000	294,350,000	406,000,000	5,000,000	15,3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42,100,000
74B	101 108 112	2층	3	46	108,625,000	286,375,000	395,000,000	5,000,000	14,75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38,250,000
		3~4층	6		109,725,000	289,275,000	399,000,000	5,000,000	14,95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39,650,000
		5~9층	16		110,825,000	292,175,000	403,000,000	5,000,000	15,15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41,050,000
		10~19층	21		113,025,000	297,975,000	411,000,000	5,000,000	15,55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43,850,000
84A	105 106 109 110	2층	2	59	126,500,000	333,500,000	460,000,000	5,000,000	18,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61,000,000
		3~4층	3		127,875,000	337,125,000	465,000,000	5,000,000	18,25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62,750,000
		5~9층	13		129,250,000	340,750,000	470,000,000	5,000,000	18,5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64,500,000
		10~19층	32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20층 이상	9		134,475,000	354,525,000	489,000,000	5,000,000	19,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84B	105 109 110	2층	3	43	122,925,000	324,075,000	447,000,000	5,000,000	17,35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56,450,000
		3~4층	5		124,300,000	327,700,000	452,000,000	5,000,000	17,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58,200,000
		5~9층	10		125,400,000	330,600,000	456,000,000	5,000,000	17,8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59,600,000
		10~19층	12		128,150,000	337,850,000	466,000,000	5,000,000	18,3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63,100,000
		20층 이상	13		130,625,000	344,375,000	475,000,000	5,000,000	18,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부과되는 건물, 토지 관련 조세는 실제 잔금납부일과 관계없이 계약 시 약정한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내외부 마감, 조경,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현장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촉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촉의 종류, 금액, 가입자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head><tr><th>순위</th><th>내 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tbody></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 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 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 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5.01.24.(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비고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5.01.24.(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당첨자 선정방법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2.11.(화) ~ 2025.02.2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2.1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정당 당첨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02.17.(월) ~ 2025.02.21.(금)	남울산 노르웨이숲 건본주택 (주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62-34)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신청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함.
-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함.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 예비입주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본인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분양사무소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당첨자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신청자 구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분양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 계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후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건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신청자 구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건본주택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확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신청자 구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 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상세)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1년이상 연속등재 확인)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구비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 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② 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 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분양사무소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③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③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②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서울시이택스), 서울 외(위택스)
	해당자	농지법 및 축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⑤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국세청 홈택스 ④ 해당 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반드시 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당첨자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 입주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일정 및 장소	비 고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2025.02.24.(월) ~ 2025.02.26.(수) 10:00 ~ 16:00까지 (3일간)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장 소	• 남울산 노르웨이숲 건본주택 (주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62-34)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126-5316-03	우리자산신탁(주)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주택전시관 비치
	○		수입인지(계약자 부담분 인지세)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구매처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견본주택 비치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필요서류	○		위임장	계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계약자(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이 해제 조치됨,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혹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견본 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의 해제가 가능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9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오피션,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2,000,000	1,200,000	10,800,000
59B	12,000,000	1,200,000	10,800,000
74A	14,000,000	1,400,000	12,600,000
74B	14,000,000	1,400,000	12,600,000
84A	15,000,000	1,500,000	13,500,000
84B	15,000,000	1,500,000	13,500,000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광주은행	1107-021-402741	우리자산신탁(주)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의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계좌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기재 또는 추후 일괄통지하며, 변경되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기타품목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건본주택 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건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시공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발코니 확장일 경우 열손실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단열공사 해당부위인 벽, 바닥, 천장이 돌출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실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방법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3층~10층 세대 발코니에는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건본주택은 74A타입 및 84B타입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1) 주방 장식장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설치 위치	타 입	판매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장식장	주방	74A	2,820,000	282,000	2,538,000	
		74B	1,960,000	196,000	1,764,000	
		84A	2,870,000	287,000	2,583,000	
		84B	1,990,000	199,000	1,791,000	

(2) 주방가구 상판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설치 위치	타 입	판매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주방	59A	450,000	45,000	405,000	주방가구 상판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이며, 주방 벽체는 기본형 타일이 시공됩니다.
		59B	450,000	45,000	405,000	
		74A	690,000	69,000	621,000	
		74B	530,000	53,000	477,000	
		84A	640,000	64,000	576,000	
		84B	660,000	66,000	594,000	

(3) 비데일체형 양변기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설치 위치	타 입	판매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비데일체형 양변기	부부욕실	전 타입	420,000	42,000	378,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옵션 선택시 기본형에서 제공되는 일반 비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NH농협은행	317-0998-6827-81	(주)유림E&C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당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 유형, 제품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7월 예정(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통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아파트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외벽색상,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위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 및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 토지는 사용승인 시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세대별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1.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기타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됨.
3.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 평면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4. 본 아파트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됨.
 5.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6. 발코니 노출 배수배관으로 인한 미관 지장 및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7. 침실1(안방), 실외기실 발코니에 우수배수배관이 설치되어 우천 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8.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9.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샷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 안방발코니, 주방발코니, 현관발코니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10.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실외기실, 안방발코니, 대 피 공간)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으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11. 세대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전함이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노출 설치되오니 사전에 견본주택의 노출된 부위를 확인 바람.
 12.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됨.
 13.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음.(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14.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소화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 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5.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6.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이 설치됨.
 17. 발코니에 보일러, 수전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18.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준공도면 및 견본주택과 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19.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주방거치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20.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공사 시 ABS 도어로 시공됨.
 21. 비내력 마감은 실별에 따라 습식, 건식 또는 골조로 변경될 수 있음.
 22. 본 아파트의 난방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세대별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됨.
 23.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남울산노르웨이숲.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24.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25. 발코니 확장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26.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다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 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27.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28.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29.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30. 세대 내부 고정형 가구(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불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바닥마루 마감재 미시공 등)
 31.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폿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람.
 32. 주방 상판, 화장대, 현관디딤판 및 걸레받이, 욕실 선반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 변경될 수 있음(색상, 재질 변경 없음, 동급이상 적용),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33.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 환기팬,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34.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35.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호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6.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37.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8.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는 노출되며, 가구장 일부를 가스배관 공간으로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또한 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39. 가스쿠팩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음.
40.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41.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42.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소방 설비,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43.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상부장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44.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45.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계약자의 개별 선호도에 따른 위치 변경은 불가함.
46.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7.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음.
48.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49.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50.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51.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2.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53. 입면 마감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4. 계단실, E/V공용홀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55.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56. 모든 세대는 주방배기는 직배기방식이 적용되며 욕실배기는 옥상흡출배기방식이고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음.
57.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 확장 세대의 경우 렌지후드 및 욕실환용 닥트가 발코니에 노출될 수 있음.
58.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59. 상층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 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측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 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가 부착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효 천장고, 유효실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60. 세대 내 바닥, 벽, 천정의 실리콘 시공은 모델하우스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리콘의 색상도 변경될 수 있음.
61. 본 공사 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은 침실 도어 뒷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로 인해 커버는 벽에 노출 시공되며 동일 타입 및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62.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식 빨래건조대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등과 스위치(배관 및 배선)는 설치되지 않음.
63. 보일러실 CO감지기는 건전지타입으로 건전지 권장 사용기간은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교체가 필요함.
64. 2층, 3층, 최상층에 설치되는 동체감지기는 세대 내에 설치됨.
65. 세대별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66. **공용욕실 무상옵션 선택 완료 4세대는 기존 공용욕실 옵션 계약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하며 변경,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승계 거부 시 계약 불가)**

구분	타입	공용욕실 옵션	비고
103동 901호	59A	건식세면대, 습식욕실(포켓도어+양변기+샤워칸막이)	
106동 903호	84A	건식세면대, 습식욕실(포켓도어+양변기+샤워칸막이)	
110동 203호	84B	습식욕실(여닫이문+양변기+세면대+샤워부스)	
112동 1001호	59A	습식욕실(여닫이문+양변기+세면대+샤워부스)	

67. 침실통합옵션 옵션 선택에서 미선택으로 변경한 103동 901호 세대는 침실2 벽체매립 냉매 배관이 공용화장실 쪽 벽체에 매립 시공되며, 기본설치 되는 불박이장이 침실2에서 침실3으로 이동 설치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변경,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거부 시 계약 불가)

■ 공용부/단지 내 환경

1.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3.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4.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한 동 세대는 조망,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5. 101동, 112동 사이에 주출입구, 106동과 107동 사이에 부출입구가 위치하며 보행자 통로,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6. 102동 남측에는 경로당, 어린이집이 위치하며, 103~104동 남측에는 커뮤니티센터(주민공동시설)가 위치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한 동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7. 101동과 112동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는 외부계단 설치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8. 차량출입 관련하여 단지 북측 15m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남측 13m도로에서 진출입 가능한 부출입구가 있고 단지 북측(103동과 104동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와 램프2(105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차로 높이는 2.7m로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택배차량은 지하1층 주차장 이용이 가능함. 차량진출입구로 인하여 빛의 산란,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9. 주민공동시설 측면에 통학차량 정차공간 및 옥외주차장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리침, 조명,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 108동, 110동 옥상층, 지하1층 105동 제연휀룸, 110동 제연휀룸에 기간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2. 단지배치 특성상 주출입구 전면의 101동, 112동까지 단지내 도로가 경사로로 계획되어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3. 저층부 1~3층 구간은 석재쌓기이며, 외벽면의 기본마감은 수성페인트로 시공되고 관계기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단지의 내부여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5. 단지의 배치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차이, 동간거리, 세대별 창호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6.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7.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악취 등 통행 및 생활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8.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9.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20. 공용시설용(주민공동시설 외) 배기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근접 세대는 미관, 소음, 바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음.
21.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천창 등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계단 또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2.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23. 단위세대의 거실 및 안방발코니 창호가 입면분할창이므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24. 자전거 보관소는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25. 각 동의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출입구에는 제연구획을 위해 방화문이 설치되며, 해당 내용에 따라 일부 출입통로의 폭이 좁을 수 있음
26.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구간,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7.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8.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9.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0. 일부 동은 같은 라인이라도 층별 공용홀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은 같은 레벨이지만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음.
31.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32.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3.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34.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 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 등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5. 실시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물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6.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7. 엘리베이터의 인증,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8.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39.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40.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에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개폐가 불가한 창호로 시공됨. 단, 일부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됨.
41.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42.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건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함.
43.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 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44. 수목의 높이 및 직경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45.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46.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47.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48. 지하주차장 천장은 전기 및 기계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됨.
49.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50.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51.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음.
52.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53.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54.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음.
55.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56.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7. 미술장식품 설치에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58. 단지 내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공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59.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60.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61. 주출입구 앞 문주 차량진입 가능 높이는 5m이상으로 시공되며 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2. 사업부지 남북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자통로와 북측 외부엘리베이터 및 외부계단은 단지 입주자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도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통행,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63. 사업부지 내 공공보행자 통로는 준공 이후 유지,보수 관리의 주체는 입주자이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공보행자 통로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사용(관리)하며, 관리주체 부담으로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처리토록 한다.
 - 공공의 이용 및 사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행제한을 할 수 없음.
64.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관계기관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개수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65. 112동 후면에 대지고저차 극복을 위한 장애인승강기가 설치(지하1층~지상1층)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 및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66. 101동, 109동, 111동, 112동 전면에 한전에서 설치하는 스위치 및 변압기 박스가 설치되며 관계기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67. 일부세대는 옥외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68.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69. 단지 통신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기준으로 설계반영 됨.(주택사업승인 최초허가일 기준)
70.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수뢰부가 보일 수도 있음.
71. 주차유도시스템 중 빈 주차 공간알림 서비스는 전용APP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1.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2.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3.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 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7.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0.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가구류, 기기, 기구, 인테리어 및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12.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13.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14.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2018년12월24일) 및 시행(2019년6월25일)에 따른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실제 적용은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2019년 9월 25일))

■ 학생 배치사항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1.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부지와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2.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 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3.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4.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5.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될 수 있음.
6.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1.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구조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2. 단지 북측은 15m, 남측 13m, 동측 11m, 서측 24m 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3.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외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및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 옹벽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4.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5.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단지 북측으로 약 36m 이격되어 온산선 철도가 운행 중이며, 철도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대책으로 완충녹지의 조성 등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므로 이후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단지 주변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소음대책은 아파트 준공 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시설의 설치는 사업주체가 부담기로 함.

■ 설계관련 변경사항

1.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2.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실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12.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단지의 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소방시설 및 환기구(급/배기)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1.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2.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며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3.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4.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5.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6.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자납 시 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7.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8.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9.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11.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함.
13.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사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14.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15.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16.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17.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18.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table border="1">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무즈 공동주택 건축주: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주)신일 준공(예정)일: 2024.09.09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 층수: 지하2층, 지상26층 연면적: 118,594.55㎡ (평가연면적: 118,048.9482㎡) 건축물종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대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2022-018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2022.01.1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td> </tr> </tabl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table border="1"> <tr> <th>분야</th> <th>평가율</th> </tr> <tr> <td>에너지 및 고효율</td> <td>37%</td> </tr> <tr> <td>에너지 및 환경오염</td> <td>34%</td> </tr> <tr> <td>재료 및 자원</td> <td>59%</td> </tr> <tr> <td>물순환 관리</td> <td>64%</td> </tr> <tr> <td>유지관리</td> <td>99%</td> </tr> <tr> <td>생태환경</td> <td>19%</td> </tr> <tr> <td>실내환경</td> <td>59%</td> </tr> </table> 종합등급 ★ ☆ ☆ ☆ 2022년 01월 19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무즈 공동주택 건축주: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주)신일 준공(예정)일: 2024.09.09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 층수: 지하2층, 지상26층 연면적: 118,594.55㎡ (평가연면적: 118,048.9482㎡) 건축물종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대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22-018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2022.01.1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분야	평가율	에너지 및 고효율	37%	에너지 및 환경오염	34%	재료 및 자원	59%	물순환 관리	64%	유지관리	99%	생태환경	19%	실내환경	59%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무즈 공동주택 2. 신청자: (주)신일 3.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문 열열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중앙냉난방 시스템</td> <td>★★★★</td> </tr> <tr> <td>2. 중앙냉난방 시스템</td> <td>★★★★</td> </tr> <tr> <td>3. 에너지 절감형 조명</td> <td>★★★★</td> </tr> <tr> <td>4. 고효율 조명(100%, 100%에 대한 실행)의 사용</td> <td>★★★★</td> </tr> <tr> <td>5. 방열설비 관리</td> <td>★</td> </tr> </table> 나. 구조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가연성</td> <td>★</td> </tr> <tr> <td>3. 수리용이성, 보수부분</td> <td>★</td> </tr> <tr> <td>4. 수리용이성, 보수부분</td> <td>★</td> </tr> </table> 다. 환경 관련 등급(가중)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에너지 절감형 조명</td> <td>★★★★</td> </tr> <tr> <td>17. 에너지 절감형 조명</td> <td>★★★★</td> </tr> <tr> <td>18. 자연채광 확보율</td> <td>★</td> </tr> <tr> <td>19. 생태환경</td> <td>★</td> </tr> <tr> <td>20. 방열설비 관리</td> <td>★</td> </tr> <tr> <td>21. 실내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 시스템의 적용</td> <td>★</td> </tr> <tr> <td>22. 자연 채광률 확보</td> <td>★</td> </tr> <tr> <td>23. 방열설비 관리</td> <td>★</td> </tr> <tr> <td>24. 방열설비 관리</td> <td>★</td> </tr> </table> 라. 생활 환경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대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 <td>★★★★</td> </tr> <tr> <td>2. 대중교통의 연결성</td> <td>★★★★</td> </tr> <tr> <td>3. 주차장 주차장 및 주차기호로와 적합성</td> <td>★★★★</td> </tr> <tr> <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5. 전선배설의 환경관리 계획</td> <td>★★★★</td> </tr> <tr> <td>6.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매뉴얼 제공</td> <td>★★★★</td> </tr> <tr> <td>7. 공용의 매뉴얼 제공</td> <td>★★★★</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td> </tr> <tr> <td>9. 방열설비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 <td>★</td> </tr> <tr> <td>12. 세대 내 접근성 확보</td> <td>★</td> </tr> <tr> <td>13. 총대형의 종합시설</td> <td>★</td> </tr> <tr> <td>14. 방열설비 관리</td> <td>★</td> </tr> </table>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화재 및 소방안전</td> <td>★</td> </tr> <tr> <td>2. 화재안전</td> <td>★</td> </tr> <tr> <td>3. 내화성능</td> <td>★</td> </tr> <tr> <td>4. 주택단위별</td> <td>★</td> </tr> <tr> <td>5. 화재안전</td> <td>★</td> </tr> <tr> <td>6. 화재안전</td> <td>★</td> </tr> </tabl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한국부동산원장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중앙냉난방 시스템	★★★★	2. 중앙냉난방 시스템	★★★★	3. 에너지 절감형 조명	★★★★	4. 고효율 조명(100%, 100%에 대한 실행)의 사용	★★★★	5. 방열설비 관리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보수부분	★	4. 수리용이성, 보수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에너지 절감형 조명	★★★★	17. 에너지 절감형 조명	★★★★	18. 자연채광 확보율	★	19. 생태환경	★	20. 방열설비 관리	★	21. 실내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 시스템의 적용	★	22. 자연 채광률 확보	★	23. 방열설비 관리	★	24. 방열설비 관리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대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연결성	★★★★	3. 주차장 주차장 및 주차기호로와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전선배설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매뉴얼 제공	★★★★	7. 공용의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방열설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접근성 확보	★	13. 총대형의 종합시설	★	14. 방열설비 관리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소방안전	★	2. 화재안전	★	3. 내화성능	★	4. 주택단위별	★	5. 화재안전	★	6. 화재안전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발급번호: 제2021-086호 <table border="1"> <tr> <td>1. 사업명</td> <td>온양 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td> </tr> <tr> <td>2. 사업주체</td> <td>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주)신일</td> </tr> <tr> <td>3. 대지위치</td> <td>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td> </tr> <tr> <td>4. 사업개요</td> <td></td> </tr> <tr> <td>대지면적</td> <td>34,577.0000 m²</td> </tr> <tr> <td>건축면적</td> <td>8,357.7447 m²</td> </tr> <tr> <td>연면적</td> <td>118,594.5500 m²</td> </tr> <tr> <td>층세대수</td> <td>848 세대</td> </tr> <tr> <td>주간층층수</td> <td>12 층</td> </tr> <tr> <td>5. 대상지역</td> <td>지역 III</td> </tr> <tr> <td>6. 평가결과</td> <td></td> </tr> <tr> <td>구분</td> <td>평가개소</td> <td>적합</td> <td>부적합</td> <td>비고</td> </tr> <tr> <td>출입문</td> <td>6 개</td> <td>■</td> <td>□</td> <td>물리적시험</td> </tr> <tr> <td>벽체접합부</td> <td>277 개</td> <td>■</td> <td>□</td> <td>결로방지 상세도</td> </tr> <tr> <td>창호</td> <td>21 개</td> <td>■</td> <td>□</td> <td>물리적시험</td> </tr> </tabl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인증승인 확인	1. 사업명	온양 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주)신일	3.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	4. 사업개요		대지면적	34,577.0000 m ²	건축면적	8,357.7447 m ²	연면적	118,594.5500 m ²	층세대수	848 세대	주간층층수	12 층	5. 대상지역	지역 III	6. 평가결과		구분	평가개소	적합	부적합	비고	출입문	6 개	■	□	물리적시험	벽체접합부	277 개	■	□	결로방지 상세도	창호	21 개	■	□	물리적시험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무즈 공동주택 건축주: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주)신일 준공(예정)일: 2024.09.09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 층수: 지하2층, 지상26층 연면적: 118,594.55㎡ (평가연면적: 118,048.9482㎡) 건축물종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대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22-018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2022.01.1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분야	평가율																																																																																																																																																					
에너지 및 고효율	37%																																																																																																																																																					
에너지 및 환경오염	34%																																																																																																																																																					
재료 및 자원	59%																																																																																																																																																					
물순환 관리	64%																																																																																																																																																					
유지관리	99%																																																																																																																																																					
생태환경	19%																																																																																																																																																					
실내환경	59%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중앙냉난방 시스템	★★★★																																																																																																																																																					
2. 중앙냉난방 시스템	★★★★																																																																																																																																																					
3. 에너지 절감형 조명	★★★★																																																																																																																																																					
4. 고효율 조명(100%, 100%에 대한 실행)의 사용	★★★★																																																																																																																																																					
5. 방열설비 관리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보수부분	★																																																																																																																																																					
4. 수리용이성, 보수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에너지 절감형 조명	★★★★																																																																																																																																																					
17. 에너지 절감형 조명	★★★★																																																																																																																																																					
18. 자연채광 확보율	★																																																																																																																																																					
19. 생태환경	★																																																																																																																																																					
20. 방열설비 관리	★																																																																																																																																																					
21. 실내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 시스템의 적용	★																																																																																																																																																					
22. 자연 채광률 확보	★																																																																																																																																																					
23. 방열설비 관리	★																																																																																																																																																					
24. 방열설비 관리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대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연결성	★★★★																																																																																																																																																					
3. 주차장 주차장 및 주차기호로와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전선배설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매뉴얼 제공	★★★★																																																																																																																																																					
7. 공용의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방열설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접근성 확보	★																																																																																																																																																					
13. 총대형의 종합시설	★																																																																																																																																																					
14. 방열설비 관리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소방안전	★																																																																																																																																																					
2. 화재안전	★																																																																																																																																																					
3. 내화성능	★																																																																																																																																																					
4. 주택단위별	★																																																																																																																																																					
5. 화재안전	★																																																																																																																																																					
6. 화재안전	★																																																																																																																																																					
1. 사업명	온양 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주)신일																																																																																																																																																					
3.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																																																																																																																																																					
4. 사업개요																																																																																																																																																						
대지면적	34,577.0000 m ²																																																																																																																																																					
건축면적	8,357.7447 m ²																																																																																																																																																					
연면적	118,594.5500 m ²																																																																																																																																																					
층세대수	848 세대																																																																																																																																																					
주간층층수	12 층																																																																																																																																																					
5. 대상지역	지역 III																																																																																																																																																					
6. 평가결과																																																																																																																																																						
구분	평가개소	적합	부적합	비고																																																																																																																																																		
출입문	6 개	■	□	물리적시험																																																																																																																																																		
벽체접합부	277 개	■	□	결로방지 상세도																																																																																																																																																		
창호	21 개	■	□	물리적시험																																																																																																																																																		

※ 본 공동주택은 상기 인증을 득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인증사항은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설계조건(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 제7조 제2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25-101-0000100 호	₩85,424,9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 호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주)유일방재엔지니어링	남경이앤지(주)
금 액	₩3,443,865,600	₩1,026,410,000	₩871,86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신탁사
상 호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주)유림E&C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 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온 양로 162-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7, 지하1층 101호(전포동,서면더블루에스 지하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20층)
사업자등록번호	316-82-63774	605-81-89115	107-81-85459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홈페이지: 남울산 노르웨이숲 홈페이지 (<http://남울산노르웨이숲.com>)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청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2.03.(월)
일반공급청약	1순위	2025.02.04.(화)
	2순위	2025.02.05.(수)
당첨자 발표일		2025.02.11.(화)
사전자격을확인서류 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5.02.17.(월) 부터 2025.02.21.(금)
당첨자 계약		2025.02.24.(월) 부터 2025.02.26.(수)
총 848 세대(전용 59A,59B,74A,74B,84A,84B㎡) 중 일반분양 332세대		

[모델하우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 양로 162-34
[사업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1번지 일원

분양문의 : 052-256-0300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